

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의 미래

서울연구원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2018년 1학기 출강 및 겸임교수, 대학원 수강 허가

2018년 1학기 대학교 출강 및 겸임교수 임용허가(인사복지팀-190,2018.01.22) 및 대학원수강승인계획(인사복지팀-570,2018.2.22)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학교(원) 출·수강 및 겸임교수임용을 허가하고자 합니다.

가. 신청내역 : 총 15명

- 1) 겸임교수임용허가 신청 : 2명
- 2) 출강 허가 신청 : 6명
- 3) 수강 허가 신청 : 7명
- 4) 세부내용 : 불임참조

나. 행정사항

- 1) 근무시간내 출강 및 수강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연차 사용
- 2) 출강 및 수강시간 변동시에는 인사복지팀으로 통보

다. 관련규정 : 직원대외활동 및 교육훈련규칙

<p>< 직원대외활동 ></p> <p>제4조(허가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① 대학등의 출강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활동허가대장<별지서식1>에 의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 (서식개정 2004.3.2, 2008.2.14)</p> <p>② 대학 등에 출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조건에 따라 출강허가신청서<별지서식2>를 작성,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 (서식개정 2004.3.2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출강대학 :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대학 2. 강 좌 수 : 주1회 1강좌 3. 출강일수 : 출강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일수 이내 <p>③ 제2항3호의 경우 출강일수는 출강자의 연월차일수에서 공제한다.</p> <p>< 교육훈련규칙 ></p> <p>제3조(연수의 구분)</p> <p>③ 학술연수 :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학원급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수학을 위한 연수 (개정 2011. 4.18)</p>
